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16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고동진 · 성일종 · 김상훈
주호영 · 강승규 · 송석준
나경원 · 안상훈 · 서범수
박정훈 · 박덕흠 · 박수민
이달희 · 최보윤 · 한기호
백종헌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를 “가정폭력행위자를,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죄를 범하거나 아동에게 그 죄를 노출시킨 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생략)

②·③ (생략)

가정폭력행위자를,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죄를 범하거나 아동에게 그 죄를 노출시킨 자를 말한다-----

 -----.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